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18
----------	------

2024년 3월 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용균 의원(찬성 12명)
나. 제안일 : 2024년 2월 5일
다. 회부일 : 2024년 2월 7일
라. 상정일 :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3월 4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용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우수봉사자 선정,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예우 및 혜택사항 등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의4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입법예고(2024.2.14. ~ 2.18.) 결과: 의견없음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(이하 '본 개정안')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하고(안 제10조의4제1항), 장기간 활동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(안 제10조의4제2항)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※ 동 개정안은 이용균 의원이 2023년 8월 14일 발의하여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“심사보류*” 되었던 개정안(의안번호 : 1123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)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임.

*심사보류 사유 : 우수자원봉사자 자격확인 문제, 공공시설의 관람료 면제 등의 사항을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와의 상충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를 이유로 심사 보류됨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호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. 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또는 면제. 다만, 다른 조례

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.

4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2024년 1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(서울시 및 자치구)은 265만명 ('24년 1월말 기준)이나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('22년 11.55%, '23년 12.14%, '24년 1월말 기준 1.9%) 본 개정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을 인정하고, 장기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<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등록 수 및 실질 참가자 수 현황>

(당해년도 누적, 단위 : 명)

구분	2022년			2023년			2024년(1.31. 기준)		
	등록인원	활동인원	참여율(%)	등록인원	활동인원	참여율(%)	등록인원	활동인원	참여율(%)
합 계	2,565,860	296,247	11.55	2,644,106	320,882	12.14	2,649,212	50,353	1.9
서울시	-	1,358	-	-	1,870	-	-	105	-
종 로	59,721	16,767	28.08	62,870	19,962	31.75	63,037	2,949	4.68
중 구	39,201	13,847	35.32	40,677	13,523	33.24	40,847	2,116	5.18
용 산	53,836	7,397	13.74	55,913	8,179	14.63	56,064	1,053	1.88
성 동	74,539	14,194	19.04	77,018	16,914	21.96	77,165	1,918	2.49
광 진	87,590	9,725	11.10	91,167	10,289	11.29	91,336	1,368	1.5
동대문	86,446	10,171	11.77	90,430	12,181	13.47	90,737	2,117	2.33
중 랑	106,520	6,619	6.21	108,979	7,692	7.06	109,116	1,365	1.25
성 북	103,211	8,929	8.65	106,940	10,228	9.56	107,170	1,973	1.84
강 북	61,239	5,737	9.37	63,083	6,488	10.28	63,212	1,182	1.87
도 봉	80,144	7,841	9.78	81,891	8,183	9.99	82,003	1,514	1.85
노 원	156,651	11,890	7.59	160,412	13,071	8.15	160,624	2,763	1.72
은 평	121,219	15,645	12.91	124,364	15,682	12.61	124,564	2,478	1.99
서대문	91,606	7,551	8.24	94,833	8,626	9.1	95,038	1,948	2.05
마 포	97,137	13,527	13.93	100,666	13,891	13.8	100,900	1,433	1.42
양 천	140,088	20,288	14.48	142,839	17,092	11.97	142,979	2,632	1.84
강 서	190,968	12,193	6.38	195,573	16,085	8.22	195,823	3,074	1.57
구 로	89,661	6,937	7.74	92,147	6,985	7.58	92,329	1,455	1.58
금 천	55,328	5,705	10.31	57,032	6,349	11.13	57,158	1,415	2.48
영등포	98,012	14,064	14.35	102,130	15,767	15.44	102,404	2,353	2.3
동 작	85,085	8,391	9.86	88,298	10,545	11.94	88,488	1,476	1.67
관 악	111,204	10,341	9.30	114,873	10,059	8.76	115,116	1,480	1.29
서 초	117,438	13,955	11.88	121,152	15,069	12.44	121,387	2,010	1.66
강 남	191,073	24,483	12.81	196,826	26,142	13.28	197,173	3,197	1.62
송 파	155,297	19,546	12.59	160,245	20,007	12.49	160,560	3,245	2.02
강 동	112,646	9,146	8.12	113,748	10,003	8.79	113,982	1,734	1.52

- 다만, 본 개정안이 기대한 효과(자원봉사자 예우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)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, 구체성이 결여된 기준(시 주관 행사, '예우', 봉사시간의 특정 이유 등)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첫째, 안 제10조의4제1항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증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인증카드 발급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또는 저변화 할 수 있을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둘째, 안 제10조의4제2항제1호는 '시 주관 주요행사' 및 '예우'의 수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, 장기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취지 또는 지원의 목적을 저해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셋째, 같은 항 제2호에서 인증패 수여의 기준을 단순히 10,000시간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※ 자원봉사 10,000시간은 1일 최소 4시간, 1년 최소 200일 이상 12년 6개월을 지속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, 통상 20~30년이 소요됨.

〈 자원봉사 10,000시간 자원봉사자 현황 〉

(24.1.31. 기준, 단위: 명, %)

자치구	자원봉사자 수						
	활동인원 (실질참가자)	누적 10,000시간 이상	비율	자치구	활동인원 (실질참가자)	누적 10,000시간 이상	비율
전체	50,353*	444	0.9%	서대문	1,948	15	0.8%
종로	2,949	13	0.4%	마포	1,433	40	2.8%
중구	2,116	7	0.3%	양천	2,632	41	1.6%
용산	1,053	10	0.9%	강서	3,074	21	0.7%
성동	1,918	9	0.5%	구로	1,455	11	0.8%
광진	1,368	10	0.7%	금천	1,415	14	1.0%
동대문	2,117	6	0.3%	영등포	2,353	21	0.9%
중랑	1,365	15	1.1%	동작	1,476	48	3.3%
성북	1,973	17	0.9%	관악	1,480	3	0.2%
강북	1,182	19	1.6%	서초	2,010	11	0.5%
도봉	1,514	10	0.7%	강남	3,197	16	0.5%
노원	2,763	11	0.4%	송파	3,245	33	1.0%
은평	2,478	29	1.2%	강동	1,734	14	0.8%

*서울시 활동인원 105명 포함

- 또한, 각 자치구별 다른 자원봉사 인증제도와 인증시간을 운영하고 있어, 자치구와 서울시 간 단계적 인증 체계[자치구(1천시간→3천시간→5천시간)→서울시(1만시간)]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집행기관(행정국)에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자치구별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기준〉

연번	자치구	표창기준		메달(인증서, 뱃지 등 포함)기준	관련 근거
		봉사시간	봉사횟수	봉사시간	
1	종로구	-	-	- 노란색 200시간 - 주황색 300시간 - 빨간색 500시간 - 보라색 1,000시간 이상	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	중구	100시간 이상	-	-	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, 내부 방침 등
3	용산구	-	-	- 봉사왕 1,000시간 이상 - 금장 500-999시간 - 은장 300-499시간 - 동장 100-299시간	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, 내부 방침 등
4	성동구	-	-	- 봉사대왕 20,000시간 - 봉사왕 3,000시간 - 금장 2,000시간 - 은장 1,000시간 - 동장 300시간	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, 내부 방침 등
5	광진구	-	-	- 자원봉사자증 : 100시간 이상	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6	동대문구	-	-	-	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7	중랑구	50시간 이상 ※ 2년 이내	-	- 1만 시간봉사왕 10,000시간 이상 - 봉사왕 1,000시간 이상 - 금장 500시간 이상 - 은장 300시간 이상 - 동장 200시간 이상	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8	성북구	60시간 이상	-	- 봉사왕 5,000시간 - 금장 3,000시간 - 은장 2,000시간 - 동장 1,000시간	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9	강북구	[성인] 100시간 이상 [청소년] 20시간 이상	30회 15회	- 인증메달 : 누적 자원봉사실적 3,000시간 이상 - 인증서 : 최근1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	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0	도봉구	[성인] 100시간 이상 [청소년] 50시간 이상	- -	-	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1	노원구	최근 2년간 봉사시간 상위 100명	-	-	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2	은평구	-	-	- 명예의 전당 7,000시간 - 우수봉사자 1,000시간	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연번	자치구	표창기준		메달(인증서, 배지 등 포함)기준	관련 근거
		봉사시간	봉사횟수	봉사시간	
				- 금장 500시간 - 은장 300시간	
13	서대문구	-	-	-	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4	마포구	-	-	- 봉사왕 1,000시간 - 금장 500시간 - 은장 400시간 - 동장 300시간	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5	양천구	100시간 이상	-	- 1만시간봉사왕 10,000시간 - 봉사왕 5,000시간 - 금장 1,000시간 - 은장 500시간 - 동장 300시간 - 해바라기장 100시간	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6	강서구	-	-	-	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7	구로구	-	-	- 봉사히어로 10,000시간 - 봉사왕 5,000시간 - 금장 3,000시간 - 은장 2,000시간 - 동장 1,000시간	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8	금천구	300시간 이상	-	-	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19	영등포구	-	-	- 금장 500시간 - 은장 300시간 - 동장 200시간 - 나눔 100시간	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0	동작구	-	-	- 7,000시간 인증서, 배지 - 5,000시간 인증서, 배지 - 3,000시간 인증서, 배지 - 2,000시간 인증서, 배지 - 1,000시간 인증서, 배지	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1	관악구	36.5시간 이상	-	-	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2	서초구	-	-	- 1,000시간 봉사왕 - 500시간 금장 - 300시간 은장	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3	강남구	[성인] 200시간 이상 [청소년] 100시간 이상	-	- GNVC배지 : 5,000시간 이상 - Crown배지 : 2,000시간 이상 - Victory배지 : 1,000시간 이상 - Nice배지 : 500시간 이상 - Good배지 : 200시간 이상	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24	송파구	[성인] 300시간 이상 ※ 3년 이상 봉사 [청소년] 200시간 이상 ※ 2년 이상 봉사	-	- 소나무 금상 10,000시간 - 소나무 은상 5,000시간 - 소나무 동상 1,000시간	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
25	강동구	-	-	- 공로상 10,000시간 - 봉사왕 4,000시간 - 금장 2,000시간 - 은장 1,000시간 - 동장 500시간	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- 한편, 안 제10조의4제1항의 인증카드와 안 제10조의4제2항제2호의 인증패 등은 일부 자치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바, 유사한 인증제도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- 넷째, 같은 항 제3호의 ‘공공시설의 관람료’의 경우 「지방자치법」(제161조 제2항)*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, 각 시설 관련 조례**는 이용료 감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,

*「지방자치법」제161조(공공시설)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**개별시설 조례 예시

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~12. 생략

- 본 개정안(안 제10조의4제2항)도 감면에 대해서는 각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각 조례마다 봉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결론적으로, 장기간·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증(인증카드 또는 인증패) 등의 방법으로 예우하고, 주차료 등의 감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화를 위한 조치로 보여,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자원봉사의 저변화 및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중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수정안의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등의 할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4제2항의 후단 및 제3호를 삭제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618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,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등의 할인 또는 면제는 관련 조례에서 개정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4제2항 본문의 후단 및 제3호를 삭제함.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
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
3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원 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 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제3호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. <u>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또는 면제. 다만,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	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개정안과 같음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<p><삭제></p>

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.

4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3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③ 개정안과 같음.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
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
3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</u> <u>2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</u> <u>3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</u> <p><u>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